

## 10 기타

개정 전	개정 후
<p>&lt;①지방세 특례 정의규정 명확화 등 §2①5의2·6, §4① §75의3, §80의2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신설)</li> <li>○ 세율의 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과세표준 공제(중과세 배제,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)</li> <li>○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지방세 감면)를 할 수 있음</li> </ul>	<p>☞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및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인구감소지역' 공통 정의 신설</li> <li>○ 세율의 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과세표준 공제, 중과세 배제,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</li> <li>○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(지방세 감면)을 할 수 있음</li> </ul>
<p>&lt;②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 법 §2, §185, 영§128&gt;</p>	<p>☞ 특례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직접 사용) 특례 적용 대상 위탁자 포함</li> <li>○ (적용 특례) 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적용</li> </ul>
<p>&lt;③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 §4⑦, 영2⑧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면규모 총량 적용 예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감면 규모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○ (감면규모 총량 별도 추가 가능 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난대응 및 복구, 국가적 현안, 정산업 육성을 위한, 특구나 단지 지원 등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는 지방세 감면 가능(영§2⑧),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p>☞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 및 별도 총량 대상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면규모 총량 적용 예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량 적용 예외 단서 규정 삭제</li> </ul> </li> <li>○ (감면규모 총량 별도 추가 대상 확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 + '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' 추가</li> </ul> </li> </ul>
<p>&lt;④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*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§180의2②&gt;</p> <p>* 리츠, 부동산펀드, PFV의 경우 취득세 대도시 중과배제</p>	<p>☞ 추징규정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과를 적용하여 감면분 추징</li> </ul>
<p>&lt;⑤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특례 신설 §186&gt;</p>	<p>☞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한 특례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제외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</li> </ul>